

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(안 제25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